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 제출 관련 Q&A

관 련 근 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제9항~제11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4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 제출 방법 등)

※ 질문번호를 누르면 해당질의로 이동합니다.

Q1.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기관은 어떻게 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Q2.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은 언제부터 제출해야 하나요?

Q3.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 제출 방법이 궁금합니다.

Q4. 전산에 조회되는 '지급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Q5.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은 언제 종사자에 지급해야 하나요?

Q6. 기관 사정상 여러달의 장기근속 장려금을 한꺼번에 청구한 경우 지급내역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Q7. 화면에 지급내역이 아무것도 안뜨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Q8. 기관 운영상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종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Q1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기관은 어떻게 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1

○ 공단으로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제출 대상입니다.('26년 2월 지급분부터 적용)

○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에 대해 종사자 지급 여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익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예) '26년 1월 급여제공 건에 대한 장기근속 장려금을 **2월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 종사자 지급내역 **미제출 시 → '26년 3월 청구 불가**

Q2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은 언제부터 제출해야 하나요?**

A2

○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 개선(2026.1.1.시행)에 따라 '26년 1월 급여제공분에 대해 **'26년 2월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건부터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26년 3월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전까지 '26년 2월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에 대한 종사자 지급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 제출 흐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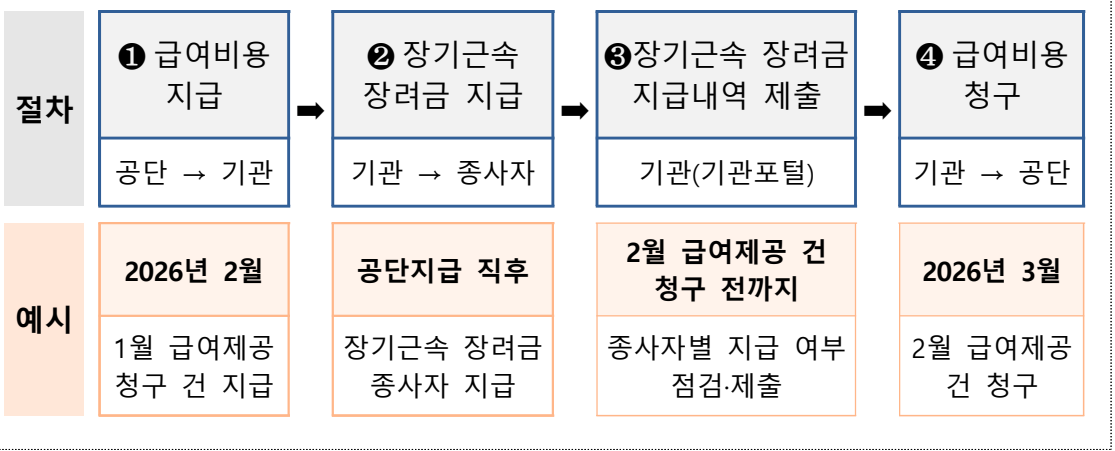

Q3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 제출 방법이 궁금합니다.**

A3

○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포털) > 요양자원 >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 제출'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해당 화면에서 공단에서 지급한 내역(종사자명, 생년월일, 지급금액)을 확인하고 기관에서 장기근속 장려금을 실제 종사자에게 지급한 경우 **'지급확인'에 체크☑하여 저장**하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Q4 **전산에 조회되는 '지급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A4

○ 조회되는 '지급금액'은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 장기근속 장려금으로 사회보험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등을 포함한 세전금액입니다.

Q5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은 언제 종사자에 지급해야 하나요?**

A5

○ 기관 운영 사정에 따라 급여(수당) 지급일이 상이할 수 있으나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종사자에게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에 대한 지급내역을 익월 청구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6 **기관 사정상 여러달의 장기근속 장려금을 한꺼번에 청구한 경우 지급 내역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A6

○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 제출은 청구월 기준이 아닌 지급월 기준입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지급 받은 건에 대해 익월 급여비용 청구 전**까지 모두 지급내역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예) '26년 1~5월까지의 장기근속 장려금을 '26년 6월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26년 7월 청구 전까지 지급내역 제출

Q7 **화면에 지급내역이 아무것도 안뜨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A7

○ 화면 접속하여 조회 시 공단 지급일자가 **전월 1일~말일까지의 내역이 기본적으로 조회**되며, 필요시 지급일자 기간을 설정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구간은 2개월 단위로 설정 가능)

○ 다만, 지급내역 자료는 '26년 2월에 공단에서 지급한 장기근속 장려금부터 조회 가능하며, 이전 기간에 지급받은 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Q8 **기관 운영상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종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A8

○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 제출'의 취지는 공단에서 지급한 장기근속 장려금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이 지급이행 여부를 자가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선 지급하고, 이후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았을 경우 해당 장기근속 장려금에 대해 실제 종사자에게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지급 내역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